

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1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4. 12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『8. 31 부동산 대책』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
-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정원의 조정

- 공무원정원 : 677명 → 680명 (8.31 부동산대책관련업무:3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663명 → 666명(증 3명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(현행과 같음)

### 나.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 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  - ▶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인력보강 지침 【도 행정과-14695(2005.12.29)호】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
 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 - (2)입법예고(2006. 1. 31~ 2. 19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  - (3)협의·승인사항 : 도 승인

거창군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677명”을 “680명”으로, 동조제1호중 “663명”을 “666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77명</u>으로 하되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3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 <u>680명</u>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: <u>66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	

[별표]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	
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	
총 계	680 (677)	265 (262)	14	134	61	73	64	45	158	
정 무 직	1	1								
일반직	소계	534 (531)	219 (216)	8	78	23	55	42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2	1	0	1	0	1	0	0	0
	5급	31	11	3	2	1	1	3	1	11
	6급	143	63	3	10	5	5	11	12	44
	7급	165 (164)	80 (79)	2	25	10	15	13	12	33
	8급	127	49	0	35	5	30	9	10	24
	9급	64 (62)	14 (12)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0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4	1	0	2	2		1	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3	6	6	4	2	21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8	1	1	1	0	6	1	1
	10급	38	19	2	2	2	0	8	3	4